

<p>대단히 감사합니다. ○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 의원 여러분, 이의 없습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		<p>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한시정원)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44명(지리정보구축기획단 20명, 교통운영개선기획단 24명)과 사업소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15명(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)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.</p>	
<p>(參 照)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중 “2,583명”을 “2,625명”으로, 동조제3호중 “5,777명”을 “5,769명”으로, 동조제4호중 “9,715명”을 “9,681명”으로 한다.</p>		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“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”로 한다. 별표의 내무국(자치행정과)란 앞에 기획관리실(시정개발담당관)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	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기획관리실 (시정개발담당관)	1.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 가. 소속교수·부교수·조교수의 승급·휴직·직위해제 및 복직 나. 소속교수·부교수·조교수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	○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	서울시립대학교 총장
<p>별표 내무국(인사과) 사무명란 제1호가목중 “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”을 “5급이하 일반직·기능직 및 별정직·전문직 공무원”으로 한다.</p>		<p>별표 지역경제국(연료과) 사무명란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호 본문 및 라목·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</p>	
주 관 국	사 무 명	근 거 법 령	수입기관
지역경제국 (연료과)	바. 도시가스시설시공자 검사, 과태료 부과·징수 및 특정가스시설 사용자 과태료 부과·징수 3. 액화석유가스사업(충전·집단공급 및 가스용품제조)에 관한 다음의 사무 라. 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 및 과징금 부과·징수	○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제54조 ○ 동법 제8조·제8조의2	구청장